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548 |
|----------|------|

제출연월일: 2019. 5. 8.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1)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50/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함(안 제31조)

나.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 상 미비점 정비

- 1)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
- 2) 원석의 시가 기준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맞게 관련조문을 수정함(안 제29조)
- 3)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맞게 수정함(안 제30조)

다.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등

###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제42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29조, 제35조
- 다.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별표 3
- 라. 「산지관리법」 제35조
- 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있음(여성가족과-16365호, 2019. 4. 12.)

- 의견 반영 여부

| 제출의견  | 검토결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안 제31조(대부료의 감면)조항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에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기업 추가 요구</li> </ul> | <p style="text-align: center;"><b>&lt; 불수용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감면 조항은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불수용</li> </ul> |

- 라.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해당없음
- 마. 입법예고: 2019. 4. 8.~2019. 4. 28.(의견 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946호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토석채취료 등)”을“(채광물의 매각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채광물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제1항의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를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으로, “사람과”를 “자와”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제30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

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4장제3절(제41조)을 삭제한다.

제66조 후단 중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평가는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출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징수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br/>(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u><br/> 가. <u>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u><br/> 나. <u>삭제</u><br/> 다. <u>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u></p> |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br/>(현행과 같음)</p> <p>② -----<br/>-----<br/>-----<br/>--.</p> <p>1. ~ 3.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p> | <p>제29조(채광물의 매각대금) ① -----<br/>-----<br/>----- 채광물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p> <p>&lt;삭 제&gt;</p> <p>③ 제1항의 매각대금-----<br/>-----<br/>-----.</p> <p>&lt;삭 제&gt;</p> |

| 현행   | 개정안  |
|--|--|
| <p><u>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u>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청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략)</p> <p><u>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u></p> <p><u>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u></p> <p><u>2.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u><br/><u>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u></p> | <p><u>&lt;삭제&gt;</u></p> <p>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

| 현행   | 개정안 |
|--|-----|
| <p><u>3.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u></p> <p>가. <u>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u><br/>                     나. <u>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br/>                     다. <u>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br/>                     라. <u>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u></p> <p><u>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u></p> <p>가. <u>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br/>                     나. <u>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br/>                     다. <u>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u></p> <p><u>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u></p> <p>가. <u>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u><br/>                     나. <u>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br/>                     다. <u>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p> |     |



| 현행   | 개정안  |
|--|--|
| <p>⑤ (생략)</p> <p>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p> <p>② 「<u>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③·④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 <p>⑤ (현행과 같음)</p> <p>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u>」 제46조 -----<br/>-----<br/>-----<br/>-----<br/>-.</p> <p>1. 2.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u>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u></p> <p>⑥ <u>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u></p> |

| 현행  | 개정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 신탁</u></p> <p><u>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 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u></p> <p>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p> | <p><u>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u></li> <li><u>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u></li> <li><u>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u></li> <li><u>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u></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br/>-----<br/>-----<br/>-----</p> |

| 현행   | 개정안   |
|--|---|
| <p>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u>」에 의한 <u>감정평가업자</u>에게 의뢰한다.</p> | <p>-----<br/>-----.<br/>-----<br/>-----<br/>-----<br/><u>평가는 감정평가업자</u>-----<br/>-----<br/>-----.</p>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일반재산의 신탁)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산지관리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감사원 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치 권고사항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2019A울산중구013  |   |   |    |                    |                 |      |   |   |   |
|-------------------------|---|---|---|----|--------------------|-----------------|------|---|---|---|
| 정책명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    |                    |                 |      |   |   |   |
| 소관부서                    | 기관명   | 울산광역시 중구  |   |    |                    |                 |      |   |   |   |
|                         | 부서명   | 회계정보과   |   |    |                    |                 |      |   |   |   |
|                         | 담당자명  | 강영호   | 전화번호 052-290-3193   |    |                    |                 |      |   |   |   |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2019년 4월 5일   |   |   |    |                    |                 |      |   |   |   |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br>(회계정보과) | <p>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계획’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p> <p>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대부분 및 사용료 감면사항을 추가반영하고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을 하며 현행 규정 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임.</p>  |   |   |    |                    |                 |      |   |   |   |
| 종합 검토 의견<br>(성별영향평가책임관) |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   |   |    |                    |                 |      |   |   |   |
|                         | <p>개정안 제 31조와 관련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 14701호)」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688호)」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두 법률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본 조례 개정안에서 제시한 창업 및 기업 지원 취지를 고려할 때, 창업 지원 대상을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업 대상에 여성기업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35%;">해당 내용<br/>(제개정 법령안)</th> <th style="width: 35%;">개선안<br/>(법령 수정안)</th> <th style="width: 20%;">검토사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td> <td>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⑤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u>에는 대부료의 <u>100분의 50 이</u> 내로 감면할 수 있다.<br/><u>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u></td> <td>「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본 조례 개정안에서 제시한 창업 지원 취지를 고려할 때, 창업 지원 대상을 청년뿐만 아니라 경</td> </tr> </tbody> </table> |   |   | 구분 | 해당 내용<br>(제개정 법령안) | 개선안<br>(법령 수정안) | 검토사유 | 1 |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 |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⑤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u> 에는 대부료의 <u>100분의 50 이</u> 내로 감면할 수 있다.<br><u>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u> |
| 구분                      | 해당 내용<br>(제개정 법령안)  | 개선안<br>(법령 수정안)   | 검토사유  |    |                    |                 |      |   |   |   |
| 1                       |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   |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⑤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u> 에는 대부료의 <u>100분의 50 이</u> 내로 감면할 수 있다.<br><u>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u> |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본 조례 개정안에서 제시한 창업 지원 취지를 고려할 때, 창업 지원 대상을 청년뿐만 아니라 경 |    |                    |                 |      |   |   |   |

|   |                        |  |  |   |  |
|---|------------------------|--|--|---|--|
|   |                        | <p>내로 감면할 수 있다.</p>  | <p><u>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u><br/>2.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u>」 제2조 1호에 따른 경력 단절여성</p>          | <p>력 단절 여성으로 확대할 것을 권함.</p>   |  |
| 2   |                        | <p>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p> <p>1. 2. 3. 4.<br/>(생략)<br/>&lt;신 설&gt;</p> | <p>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⑥<br/>1. 2. 3. 4. (현행과 같음)</p> <p>5. 「<u>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 1호에 따른 여성기업</p> | <p>「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 개정안에서 제시한 기업 지원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 기업 대상에 여성기업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p> |  |
| <p>검토의견<br/>반영계획서</p>   | <p>2019년 4월 26일 까지</p> |  |  |   |  |
|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19년 04월 12일</p> <p>울산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p> |                        |  |  |   |  |

(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03)

회계정보과장 귀하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               |  |   |   |              |
|---------------|--|---|---|--------------|
| 관리번호          | 2019A울산중구013   |   |   |              |
| 정책명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              |
| 소관부서          | 기관명  | 울산광역시 중구  |   |              |
|               | 부서명  | 회계정보과   |   |              |
|               | 담당자명   | 강영호   | 전화번호  | 052-290-3193 |
|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  |   |   |              |
| 1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본 조례 개정안에서 제시한 창업 지원 취지를 고려할 때, 창업 지원 대상을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으로 확대할 것을 권함. | <input type="checkbox"/> 수용<br><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수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감면 조항은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불수용. |              |
| 2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 개정안에서 제시한 기업 지원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 기업 대상에 여성기업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 <input type="checkbox"/> 수용<br><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br><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수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감면 조항은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불수용. |              |
| 2019년 04월 15일 |  |   |   |              |
| <b>회계정보과장</b> |  |   |   |              |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   |   |              |